■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8. 17.>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자가소비자는 생략 가능)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Fax
	공장 주소	전화번호/Fax

신청내용	목재제품 명칭(모델 명칭)
	목재제품 용도
	생산·수입 연월일
	생산국·생산업체명(수입품일 경우)
	생산량·수입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유의사항

자가소비자란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소비자가 되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결과 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